

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(압류) 및 「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20조(급수중지와 폐전) 및 제61조(지방세 징수예의 준용) 규정에 의거, 정수처분(단수)된 수도사용자에게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·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2일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장



1. 공고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건 명 :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
- 나. 대 상 자 : 총 5명(서*찬, 서*효, 신*순, 신*돌, 신*국)
- 다. 내 용 : 상하수도요금 장기 체납 수용가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
예고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및 유의사항

- 가. 공고기간 : 2025. 9. 2. ~ 2025. 9. 15.(14일간)
- 나. 강제처리 일시 : 2025. 9. 16. 이후
- 다.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에 의거하여
재산압류 및 직권폐전조치 예정임
- 라. 기타 공고내용 문의 :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요금팀

▷ 담당자(은영주) : ☎ (051) 669-5454